

교원양성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26. 5.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본 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과 유아교육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양성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과 학생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양성과정“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무시험검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 등의 과정을 말한다.
2. “교직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자격기준이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유아교육학과”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자격기준이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4. “적성 및 인성 검사“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으로서, 교원자격에 대한 적성과 교육자로서 함양하여야 하는 인성을 갖추었는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으로서, 예비 교원으로서 안전교육 준전문가 양성 및 학생 구조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습 교육을 말한다.
6.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7. “학교현장실습“이란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중등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교육실습으로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1항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말한다.
8. “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1항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말한다.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제4조(설치) 본 대학교 교원양성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외부인사 한명 포함)으로 구성하되, 교무연구처장, 교육대학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교무연구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양성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3. 교육과정 개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4. 기타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제3장 교원양성과정 운영

제7조(교직과정 이수 신청)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제한한다.

②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 인원은 별표1과 같다.

③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소정의 신청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무연구처장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직과정 설치 승인 인원 범위 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얻어 2학년 말에 선발하며, 선발한 명단은 해당 학과(부)장에게 통보한다.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3학년으로 복학이나 재입학한 자는 복학이나 재입학 신청 시점이 2학년 종료 이전이라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없다.

제9조(유아교육학과 학생 이수자격 취득) 유아교육학과 학생은 입학정원과 승인정원이 동일함에 따라 신(편)입학과 함께 이수 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교직과목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학기 수강신청학점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이외의 일반 학생도 선택과목으로 교직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양성과정의 이수학점 등)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교원자격 취득 기준에 맞게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는 학업성적이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표2에 제시한 교원자격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1학점이상(7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표시과목 관련 전공 5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원자격 취득학점 미 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7조의 2에 의거 졸업연기원을 제출하여 미 이수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4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12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로서 소정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지원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2. 간호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
3. 영양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4.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

②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한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 중에서 제7조 및 제10조의 조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단,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증 발급일은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해야한다.

제13조(교원자격 결격사유) ①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② 교무연구처장은 검정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다음 사항을 참고해 학칙 등에 결격 사유 확인 내용을 반영한다.

1. 성범죄이력 관련

2.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제14조(학교현장실습)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 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에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간접으로 운영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제4학년 1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지원팀에서는 학교현장실습에 관한 대상 학교 선정 및 기타 행정 사항을 담당한다.

④ 교무연구처장은 실습 대상학교의 선정에 있어 실습생 및 대상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선정하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수업을 담당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무연구처장은 교육실습 대상 학교와 교육실습일정, 내용, 인원등 교육 실습계획에 대하여 교육실습 14일전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교육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봉사활동)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는 60시간이상(30시간 1학점)의 교육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② 학사지원팀에서는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대상기관 선정 및 기타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③ 봉사활동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 교실, 늘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해야한다.

제16조(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적성 및 인성검사에 2회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교직과목 담당 교수 혹은 학사지원팀 교직과정 담당자와 심층 면담 이후 재검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성인지교육)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2.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단,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 ② 교육의 내용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에 따른다.
- ③ 교무연구처장은 교육 실시 이후에 이수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교무연구처장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한 후에는 이수(수료)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한다.
-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수자를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 1회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9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팀-1416, 2026.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종전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 시작일 전 1일까지로 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정된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및 유아교육학과 재(휴)학생은 이 규정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운영되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인원			
			2021	2022	2023	2024
한국어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국어	1	폐지	폐지	폐지
영어학과	〃	영어	2	2	폐지	폐지
중국학과	〃	중국어	2	폐지	폐지	폐지
경영학과	〃	상업	2	2	2	2
무역물류전공	〃	상업	2	2	폐지	폐지
기업회계전공	〃	상업	2	2	폐지	폐지
관광경영학전공	〃	관광	1	1	폐지	폐지
원예·조경학전공	〃	식물자원·조경	1	폐지	폐지	폐지
동물자원학과	〃	동물자원	1	폐지	폐지	폐지
생명과학과	〃	생물	1	폐지	폐지	폐지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컴퓨터	1	폐지	폐지	폐지
컴퓨터공학과	〃	정보·컴퓨터	2	2	2	2
신에너지·자원공학과	〃	자원·환경	1	폐지	폐지	폐지
환경공학과	〃	자원·환경	1	폐지	폐지	폐지
건설시스템공학과	〃	건설	1	폐지	폐지	폐지
산업디자인학과	〃	디자인	1	1	1	폐지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2	2	2	2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2	2	2	2

(별표 2)

교직과정 이수자의 기본이수영역

교육부고시 2023-14호(2023.03.29)

대 학	학 과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과목)	비고
경상대학	경영학과	상업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3)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5)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 컴퓨터	(1)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2)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3)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4)운영체제, 네트워크 (5)컴퓨터구조, 논리회로 (6)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공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예술체육 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	(1)디자인교육론, 색채학, 스케치기법 (2)조형,디자인제도,컴퓨터그래픽, 3D 모델링,그래픽디자인,영상디자인 (3)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공간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디자인, 웹디자인	(1)분야 필수 (2)분야 에서 3과목 이상 이수 (3)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보건의료 대학	간호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 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 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과목에 학교안전 교육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식품영양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과목 이상 (4),(5)에서 각 1과목 이상

[별지 제2호 서식]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작성자 직 : 성명 : (인)

일련번호	학과명	성명	생년월일	입학연월일	편입자		
					편입연월	편입학년	전직학교명

[별지 제3호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

대학(교) 학과

순번	학위등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평균 성적		입학 년도	졸업 년도	자격 종별	표시 과목		교직과정 이수예정 자명부제 출연월일	합격 여부
				전공	교직				전공	부전공		

[별지 제4호 서식]

교원자격증발급대장

자격증 번호	자격종별	표시과목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발 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별지 제5호 서식]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

기관명 :

자격종별 :

단과 대학	학과	학위 등록 번호	자격증 번호	표시 과목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발 급 연월일	자격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제출연월일
									조	항	호	